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발의연월일 : 1993. 11./6.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사회기능의 세분화·전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방 행정인의 양성은 물론, 관리직 공무원의 정책입안 및 행정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도정의 경영화' 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민주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를 제공, 날로 고급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충족
-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풍토 조성 과 공직자의 사기양양 및 관·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도정발전을 도모코자
-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 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위함

### □ 주요골자

- 도내대학원 야간과정에 수학케할 분야는 지방행정(지방재정), 지역 및 산업개발, 기타지방행정관련 분야로 정하고, 장학생 선발은 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 장학금지급액은 해당 대학원이 정하는 등록금전액으로 하되,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 만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제5조)

- 장학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품위유지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의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이상의 기간동안 도에 의무 근무토록하여야 하고, 재학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졸업후 근무기간을 미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지급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 근거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28호

□ 예산 상황

- '94 당초 예산에 15백만원 요구

□ 기타참고자료 : 붙임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이하 '도' 라 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도 소속공무원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제4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도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자
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를 받은자
3. 입학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교육기관장으로 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경우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경우
3. 재학중 비위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년한이 경과 되기 전에 퇴직하고자 할때

제7조 (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